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5172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768,650원 및 그 중 317,512,472원에 대하여 2022. 8. 30.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1.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1. 11. 22. 접수 제217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원고와의 2016. 5. 13.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22. 5. 6.까지 연장하는 등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해오던 중 2022. 5. 16. 신용보증사고(원금연체)를 일으켰다.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022. 5. 16. 사고통지를 받고 2022. 8. 30.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311,624,045원, 이자 5,888,427원, 합계 317,512,47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피고 B은 2021. 11. 22. 피고 C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2022. 8. 30.에서야 비로소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갑 8호증의 1~3, 갑 12호증의 6,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21. 9. 27. 피고 C이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건물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21.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위 매매 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4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조합)의 피담보채무 4억 6,000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2021. 10. 1. 1,000만 원, 2021. 10. 30.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 및 시설비 1억 원은 2021. 11.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및 계약금 3,000만 원 지급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잔금 2억 5,000만 원 및 시설비 1억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한 위 각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된 것이고, 여기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로도 피고 A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대출해주기도 한 점(갑 5호증)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

1. E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북 진천군 F, G에 있는 H동

[도로명 주소] 충북 진천군 I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북 진천군 F 대 3,158㎡

충북 진천군 G 대 8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J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82.3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008분의 109.2194

2. K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북 진천군 F, G에 있는 H동

[도로명 주소] 충북 진천군 I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북 진천군 F 대 3,158㎡

충북 진천군 G 대 8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L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6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008분의 79.6059

3. M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북 진천군 F, G에 있는 H동

[도로명 주소] 충북 진천군 I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북 진천군 F 대 3,158㎡

충북 진천군 G 대 8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N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6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008분의 79.6059. 끝.

